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1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에 대해 시민 및 서울특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 물가대책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견해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토록 한 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절차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